

예산총칙

2025년도 간주예산 2 차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5,454,664	21,163,640
일반회계	694,586,906	20,837,607
특별회계	10,867,758	326,033
기타특별회계	10,867,758	326,033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61,479	4,8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308	69
주차장특별회계	3,991,701	119,751
의료급여특별회계	888,662	26,66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491,426	14,74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1,720	3,052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230,462	156,914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012,34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9,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교부되는 국·시비보조금(구비부담금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